해양수산부공고 제2021-1109호

2021년 제2회 해양수산부 전문임기제 공무원 (해사안전감독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1년 제2회 전문임기제 공무원(해사안전감독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시행하니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1년 11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1. 임용예정 분야 · 직급 및 담당예정업무 등

< 해사안전감독관 채용 분야, 직급 및 담당예정업무 등 >

분야	직급	채용 인원	담당 예정 업무	근무 예정지
여객·화물선 (운항감독)	전문임기제 가급	2	선박 운항관리, 여객관리 등 운항안전, 선박안전 등과 관련한 해사안전지도·감독 및 행정업무 등	각 지방해양수산청
여객·화물선 (운항감독)	전문임기제 나급	3	선박 운항관리, 여객관리 등 운항안전, 선박안전 등과 관련한 해사안전지도·감독 및 행정업무 등	각 지방해양수산청
여객·화물선 (감항감독)		2	선체, 기관의 정비상태 등 선박의 감항성, 선박안전 등과 관련한 해사안전지도·감독 및 행정업무 등	각 지방해양수산청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6905호)

○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해사안전법」 및 「해사안전법 시행령」 등

3. 채용 기간 및 보수 수준

가. 계약기간 : 계약일(임용일)로부터 2023. 1. 31. 까지

※ 「해사안전법 시행령」의 해사안전감독관 자격기준(65세 미만)에 따라 개인별 계약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행정안전부 협의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가능

※ 전문임기제 가급의 경우, 임용 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가 있으며, 퇴직 후 취업 등이 제한될 수 있음

나.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연봉 상한액 및 하한액 범위에서 산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 다만, '가'급의 경우 연봉 상한액은 하한액의 150% 범위에서 정함

【 (참고) '21년도 전문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의 범위 】

직 급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가급	-	61,684천원
전문임기제 나급	76,686천원	51,098천원

※ 상기 연봉한계액 범위는 2021년 기준(참고)이며, 2022년 임용 시 개정 기준 적용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초과 시 가입 불가)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4. 응시 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1.12.27. 예정)

가. 공통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나. 응시자격요건(1개 분야만 지원 가능, 중복지원 불가)

여객선·화물선 분야	
전문임기제 가급(책임급) (운항감독분야)	**다음의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 가. 1급 항해사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총톤수 1만톤(여객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나. 1급 항해사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대형 선단[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 7척 이상으로 이루어진 선단을 말함]의 안전관리책임자로 7년 이상 또는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경력 포함)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선박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의 정회원인 경우로 한정]에서 선박검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마.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후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바. 선임급 해사안전감독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전문임기제 나급(선임급) (운항감독분야)	**다음의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 가. 1급 항해사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총톤수 1만톤(여객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나. 1급 항해사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대형 선단[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 7척 이상으로 이루어진 선단을 말함]의 안전관리책임자로 2년 이상 또는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경력 포함)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선박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의 정회원인 경우로 한정]에서 선박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마.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후 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해양수산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전문임기제 **나급**(선임급) (감항감독분야)	**다음의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 가. 1급 기관사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총톤수 1만톤(여객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에서 기관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나. 1급 기관사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대형 선단[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 7척 이상으로 이루어진 선단을 말함]의 안전관리책임자로 2년 이상 또는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경력 포함)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선박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의 정회원인 경우로 한정]에서 선박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마.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후 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해양수산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①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계산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1. 12. 27.) 기준으로 판단

② 1개 분야만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

③ 관련분야 최종 근무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경력의 범위 등

① '응시자격요건'의 '해사안전 관련 분야'란,
선박의 운항(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선박에 승무한 경우를 말함), **조선, 선박안전관리, 선박검사 및 해양수산행정 등에 관한 업무 분야를 말함**

② '유급휴가기간'은 경력기간의 산정에 포함함

③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상에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주00시간)가 기재되어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발급확인자 성명,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미제출 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④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다. 우대요건 및 가점

구 분	내 용
우대요건	○ **관련분야 근무경력 소지자 실적** - 아래에 명시된 직종에 해당하는 경력 중 필수요건 경력[여객선·화물선 선장·기관장 가급 3년, 나급 1년 / 여객선·화물선 안전관리책임자 가급 7년, 나급 2년 / 여객선·화물선 안전관리자·선박검사원 가급 10년, 나급 5년 / 여객선·화물선 일반직공무원 가급 5급 이상 3년, 나급 6급 이상 5년 / 선임급 해사안전감독관 5년(가급만 해당), 상세사항 '응시자격요건' 참조] 및 기본요건 경력(가급 20년, 나급 15년) 충족에 사용한 경력을 제외한 초과경력에 대하여 우대 ※ **관련분야** - (**운항감독분야**) 선장,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검사원, 선급(국제선박연합회 정회원에 한함), 선박검사원,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일반직 공무원, 해사안전감독관 - (**감항감독분야**) 기관장,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검사원, 선급(국제선박연합회 정회원에 한함), 선박검사원,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일반직 공무원, 해사안전감독관
	○ **담당예정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연구논문 및 용역실적** - (연구논문) 최근 5년 이내('17.1.1. 이후)에 SCI, SSCI, A&HCI, SCIE, SCOPUS, KCI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학위논문 제외) - (용역실적) 최근 5년 이내('17.1.1. 이후)에 수행한 실적에 한함
	○ **해사안전 관련 분야와 관련된 상훈**(건별 차등 우대) - 최근 5년 이내('17.1.1. 이후)에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것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표창)에 한정 * (공공기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된 공공기관에 한함
	○ **관련분야 자격증**(등급에 따라 차등 우대) - 조 선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기 계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일반기계기사 - 위 험 물 :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 에너지관리 :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전 기 :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동일 분야 자격증 2개 이상 제출시 가장 등급이 높은 자격증 1개만 인정
가 점	○ 한국사검정능력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 '17.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 3급 이상 소지자 등급별 차등 가점 부여

○ 우대요건 및 가점 기본사항

① 우대요건·가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경력, 연구·용역, 상훈 및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21. 12. 2.) 기준으로 판단

②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증 및 어학성적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출 불필요

○ 경력의 범위 등

- 경력기간, 경력증명서 등 관련사항은 '나.응시자격요건', '경력의 범위 등' 의 ②~④항 참조

5. 시험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1.22.(월) ~'21.12.2.(목)	'21.11.30.(화) ~'21.12.2.(목)	'21.12.20.(월)	'21.12.27.(월)	'21.1.5.(수)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에 게재 예정

※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 발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에 게시하고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6.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선발예정 분야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공고문에 제시된 응시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인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서류평가 후 응시원서 접수인원에 따라 3배수 선발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의지력, 성장가능성, 담당예정업무와 관련 분야 근무경력 등 우대요건 등 평가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따른 평정요소(5개)를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평정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불합격기준)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이상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7.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1. 11. 30.(화)~12. 2.(목), 09:00~18:00**

접수처	주 소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044-200-5079

○ '원서접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1. 12 2.) 소인분까지만 유효(방문 및 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음)

○ 원서접수시에는 **정부수입인지**를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구매 후 첨부하여야만 접수처리 완료됨

- **정부수입인지**는 **'전문임기제 가급 및 나급'** 모두 **1만원** 임

- 단,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응시수수료 면제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반드시 첨부

○ 우편접수자는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본인 주소를 기재한 「반송용 봉투(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한글번역문(공증)도 같이 제출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미사용)

○ 서류는 원본제출(상장 등)이 불가능한 경우만 사본 제출

< 제출서류 목록 >

구 분		내 용
1. 제출서류 총괄표 1부 **(별지서식 제1호 작성)**	필수제출	ㅇ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제출서류 맨 앞에 집게(클립)으로 고정해서 제출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작성)**	필수제출	ㅇ《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작성)**	필수제출	ㅇ《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작성)**	필수제출	ㅇ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작성)**	필수제출	ㅇ A4용지 2~3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6. 경력(재직)증명서 및 관련분야 주요경력 요약서 **(별지서식 제6호 작성)**	필수제출	ㅇ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ㅇ **'관련분야 주요경력 요약서' 작성·제출**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ㅇ **해기사 경력자는 해기사 면허증 및 승무경력증명서(지방해양수산청 발급) 사본 반드시 제출** ㅇ 경력증명서는 발급기관에 자체 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대체 제출 가능하나,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근무형태(주00시간근무),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반드시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되어야 함** **※ 불명확할 경우 경력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7. 연구논문 요약서 **(별지서식 제7호 작성)**	해당자 제출	ㅇ SCI, SSCI, A&HCI, SCIE, SCOPUS, KCI에 게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각 홈페이지 화면 캡쳐 등) 및 논문표지, 논문제목, 기여도 및 발표자 등이 표시되어 있는 논문 사본 제출
8. 관련분야 용역실적 **(별지서식 제8호 작성)**	해당자 제출	ㅇ 용역계약서를 포함 용역상세내용, 완료여부(준공계 서류 등), 참여자 및 본인 기여도(결과보고서 등 수치표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9. 상훈 증빙자료	해당자 제출	ㅇ 직무분야와 관련된 수상, 상훈 사본 등 증빙자료 **※ 개인성명이 기재된 것에 한정**
10. 우대요건 자격증 증빙자료	해당자 제출	ㅇ 자격증 사본 제출
1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부	해당자 제출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12. 주민등록 초본(원본) 1부	필수제출	ㅇ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제출
13.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9호 작성)**	필수제출	ㅇ **자필 기재 및 서명**

※ 제출서류는 별지 서식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8.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및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시험계획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시험 7일전까지 공고함

※ 코로나19 관련 유사시 해당시험 7일 이내에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및 제출한 응시원서 상의 휴대폰번호로 안내 예정

9. 기타 참고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임용이후 3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공무원임용령」 제1조제1항에 따라 동령 제13조2에 따른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는 동 전형의 채용후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추후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예: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시험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채용·공모)를 통해 공고하오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람

○ 제출한 응시서류 등 일체의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내에 불합격자 및 원본에 한하여 반환요청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자격요건 관련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044-200-5822)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인사팀(044-200-5079)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별첨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채용예정 직급 및 분야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전문임기제 가급(해사안전감독관) (여객선·화물선 운항감독)

주요업무	ㅇ 「해사안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 ㅇ 「해사안전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ㅇ 「해사안전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항행정지명령의 집행 및 이행 확인 ㅇ 해운법령 및 「여객선안전관리지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여객선 감독관에 한한다) - 여객선 특별점검, 운항관리자(「해운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고 접수, 운항관리규정 심사·변경요구,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보고 접수,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종선 운항 지도·감독, 그 밖에 해운법령에 따라 여객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도·감독 업무 ㅇ 「원양산업발전법」및 원양어선안전관리지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원양어선감독관에 한한다) - 원양어선 특별 점검,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자율이행의 보고 접수·점검 및 지도,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규정 개정요소 식별·변경 요구, 표준 안전관리 메뉴얼의 이행 점검, 자격있는 법정 승무정원의 승선여부 현장점검, 출항 전 선박 안전 점검, 그 밖에 원양어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도·감독 업무 ㅇ 해양사고 예방 및 적정한 해사안전관리 시행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장관이 지시하는 업무
필요역량	ㅇ **(공 통)**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ㅇ **(직급별)**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 능력, 조정능력 ㅇ **(직렬별)** 해양사고예방을 위하여 선장(선박), 사업장, 운항관리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하는 업무로 고도의 전문성과 투철한 공직관 필요
필요지식	ㅇ 선박(안전, 운항 등) 및 해양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 ㅇ 해사안전관련 국내법·국제법 등 해사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학문적 지식 ㅇ 해사안전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 리더십과 전문적 행정지식
응시요건	**직무분야 : 해사안전** 다음의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 가. 1급 항해사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총톤수 1만톤(여객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나. 1급 항해사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대형 선단[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 7척 이상으로 이루어진 선단을 말함]의 안전관리책임자로 7년 이상 또는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경력 포함)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선박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의 정회원인 경우로 한정]에서 선박검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마.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후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바. 선임급 해사안전감독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우대사항	ㅇ 응시자격요건 각 목 충족에 사용한 경력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경력 ㅇ 담당예정업무 관련 연구, 용영실적 및 해사안전 관련 분야 상훈 ㅇ 관련분야 자격증(조선, 기계, 위험물, 에너지관리, 전기 분야)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채용예정 직급 및 분야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전문임기제 나급(해사안전감독관) (여객선·화물선 운항감독)

주요업무	ㅇ「해사안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 ㅇ「해사안전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ㅇ「해사안전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항행정지명령의 집행 및 이행 확인 ㅇ 해운법령 및「여객선안전관리지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여객선 감독관에 한한다) - 여객선 특별점검, 운항관리자(「해운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고 접수, 운항관리규정 심사·변경요구,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보고 접수,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종선 운항 지도·감독, 그 밖에 해운법령에 따라 여객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도·감독 업무 ㅇ「원양산업발전법」및 원양어선안전관리지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원양어선감독관에 한한다) - 원양어선 특별 점검,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자율이행의 보고 접수·점검 및 지도,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규정 개정요소 식별·변경 요구, 표준 안전관리 메뉴얼의 이행 점검, 자격있는 법정 승무정원의 승선여부 현장점검, 출항 전 선박 안전 점검, 그 밖에 원양어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도·감독 업무 ㅇ 해양사고 예방 및 적정한 해사안전관리 시행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장관이 지시하는 업무

필요역량	ㅇ **(공 통)**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ㅇ **(직급별)**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 능력, 조정능력 ㅇ **(직렬별)** 해양사고예방을 위하여 선장(선박), 사업장, 운항관리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하는 업무로 고도의 전문성과 투철한 공직관 필요

필요지식	ㅇ 선박(안전, 운항 등) 및 해양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 ㅇ 해사안전관련 국내법·국제법 등 해사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학문적 지식 ㅇ 해사안전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 리더십과 전문적 행정지식

응시요건	**직무분야 : 해사안전**
	다음의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 가. 1급 항해사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총톤수 1만톤(여객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나. 1급 항해사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대형 선단[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 7척 이상으로 이루어진 선단을 말함]의 안전관리책임자로 2년 이상 또는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경력 포함)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선박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라.「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의 정회원인 경우로 한정]에서 선박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마.「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후 6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해양수산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우대사항	ㅇ 응시자격요건 각 목 충족에 사용한 경력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경력 ㅇ 담당예정업무 관련 연구, 용영실적 및 해사안전 관련 분야 상훈 ㅇ 관련분야 자격증(조선, 기계, 위험물, 에너지관리, 전기 분야)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채용예정 직급 및 분야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전문임기제 나급(해사안전감독관) (여객선·화물선 감항감독)

주요업무	ㅇ「해사안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 ㅇ「해사안전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ㅇ「해사안전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항행정지명령의 집행 및 이행 확인 ㅇ 해운법령 및 「여객선안전관리지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여객선 감독관에 한한다) - 여객선 특별점검, 운항관리자(「해운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고 접수, 운항관리규정 심사·변경요구,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보고 접수,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종선 운항 지도·감독, 그 밖에 해운법령에 따라 여객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도·감독 업무 ㅇ「원양산업발전법」및 원양어선안전관리지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원양어선감독관에 한한다) - 원양어선 특별 점검,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자율이행의 보고 접수·점검 및 지도,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규정 개정요소 식별·변경 요구, 표준 안전관리 메뉴얼의 이행 점검, 자격있는 법정 승무정원의 승선여부 현장점검, 출항 전 선박 안전 점검, 그 밖에 원양어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도·감독 업무 ㅇ 해양사고 예방 및 적정한 해사안전관리 시행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장관이 지시하는 업무
필요역량	ㅇ **(공 통)**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ㅇ **(직급별)**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 능력, 조정능력 ㅇ **(직렬별)** 해양사고예방을 위하여 선장(선박), 사업장, 운항관리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하는 업무로 고도의 전문성과 투철한 공직관 필요
필요지식	ㅇ 선박(안전, 운항 등) 및 해양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 ㅇ 해사안전관련 국내법·국제법 등 해사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학문적 지식 ㅇ 해사안전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 리더십과 전문적 행정지식
응시요건	**직무분야 : 해사안전** 다음의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포함하여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 가. 1급 기관사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총톤수 1만톤(여객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에서 기관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나. 1급 기관사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대형 선단[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 7척 이상으로 이루어진 선단을 말함]의 안전관리책임자로 2년 이상 또는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경력 포함)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선박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라.「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의 정회원인 경우로 한정]에서 선박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마.「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후 6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해양수산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우대사항	ㅇ 응시자격요건 각 목 충족에 사용한 경력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경력 ㅇ 담당예정업무 관련 연구, 용영실적 및 해사안전 관련 분야 상훈 ㅇ 관련분야 자격증(조선, 기계, 위험물, 에너지관리, 전기 분야)

<별지서식 제1호>

서류전형 증빙자료 제출서류 총괄표

성 명	전문임기제 응시 직급(분야) 및 응시요건 (아래 1개만 선택)															
	여객선·화물선															
	가급(운항)						나급(운항)					나급(감항)				
	가	나	다	라	마	바	가	나	다	라	마	가	나	다	라	마
	□	□	□	□	□	□	□	□	□	□	□	□	□	□	□	□

▣ 작성목록(총괄표)

* 응시원서 제출 시 반드시 반송용봉투를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록		제출여부
① 제출서류 총괄표 1부 (별지서식 제1호)	필수	□ 제출 □ 미제출
②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필수	□ 제출 □ 미제출
③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필수	□ 제출 □ 미제출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필수	□ 제출 □ 미제출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필수	□ 제출 □ 미제출
⑥ 경력(재직)증명서 및 관련분야 주요경력 요약서	필수	□ 제출 □ 미제출
⑦ 해기사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 제출	□ 제출 □ 미제출
⑧ 승무경력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제출	□ 제출 □ 미제출
⑨ 담당예정분야 관련 연구논문 요약서 및 관련 증빙자료	해당자 제출	□ 제출 □ 미제출
⑩ 담당예정분야 관련 용역실적 요약서 및 관련 증빙자료	해당자 제출	□ 제출 □ 미제출
⑪ 직무분야와 관련된 상훈실적 증빙자료	해당자 제출	□ 제출 □ 미제출
⑫ 우대사항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제출	□ 제출 □ 미제출
⑬ 한국사검정능력시험인증서 사본 1부	해당자 제출	□ 제출 □ 미제출
⑭ 주민등록초본 1부	필수	□ 제출 □ 미제출
⑮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필수	□ 제출 □ 미제출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2021. . .

성명 : (서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제2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table>
<tr><td>※응시번호</td><td colspan="11"></td><td rowspan="2">성명</td><td colspan="5">(한글)</td></tr>
<tr><td rowspan="3">응시직급
(분야) 및
응시요건
* 1개만 선택</td><td colspan="11">여객선·화물선</td><td colspan="5">(한자)</td></tr>
<tr><td colspan="3">가급(운항)</td><td colspan="5">나급(운항)</td><td colspan="3">나급(감항)</td><td>가</td><td>나</td><td>다</td><td>라</td><td>마</td></tr>
<tr><td>가</td><td>나</td><td>다</td><td>라</td><td>마</td><td>바</td><td>가</td><td>나</td><td>다</td><td>라</td><td>마</td><td>가</td><td>나</td><td>다</td><td>라</td><td>마</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주민등록
번 호</td><td colspan="11">-</td><td>복수국적
해당여부</td><td colspan="5"></td></tr>
<tr><td>주 소</td><td colspan="17">(㉮)</td><td rowspan="3">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td></tr>
<tr><td>전자우편</td><td colspan="17"></td></tr>
<tr><td>전 화
(휴대전화)</td><td colspan="17"></td></tr>
</table>

㊞

응 시 표

<table>
<tr><td rowspan="4">※응시번호</td><td rowspan="4"></td><td rowspan="4">응시직급
(분야) 및
응시요건
* 해당란 체크</td><td colspan="12">여객선·화물선</td></tr>
<tr><td colspan="4">가급(운항)</td><td colspan="5">나급(운항)</td><td colspan="3">나급(감항)</td></tr>
<tr><td>가</td><td>나</td><td>다</td><td>라</td><td>마</td><td>바</td><td>가</td><td>나</td><td>다</td><td>라</td><td>마</td><td>가</td><td>나</td><td>다</td><td>라</td><td>마</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성명</td><td colspan="18">(한글) (한자)</td></tr>
<tr><td colspan="19">2021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td></tr>
</table>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및 분야 : 응시직급(분야) 및 응시요건 해당란 1개만 체크

3. 성명·주민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4.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 기재

6. 정부수입인지(1만원) : 우체국 및 온라인(https://www.e-revenuestamp.or.kr)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서식 제3호>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번호	응시직급(분야) 및 응시요건(1개만 선택)															성 명	
	여객선·화물선																
	가급(운항)						나급(운항)					나급(감항)					
	가	나	다	라	마	바	가	나	다	라	마	가	나	다	라	마	
	□	□	□	□	□	□	□	□	□	□	□	□	□	□	□	□	

나. 응시자격

면허	해기사 면허 직종 및 등급	해기사면허			발급기관
		최초 취득일	유효기간		
기본경력	근무기관 (부서명)	근무기간	근무월일수	직 위	담당업무
		2000.1.1.~2010.1.1	10년 0개월	선장	상세히 작성
				1항사	

다. 우대사항(해당자만 작성)

경력	근무기관 (부서명)	근무기간	근무월일수	직 위	담당업무
		2000.1.1.~2010.1.1	10년 0개월	선장	상세히 작성
				1항사	
연구실적	제 목	연구자 / 저자 (공동연구의 경우 전원)	게재지명 (발표기관)	발표(발행) 년월일	등재구분 (SCI, SSCI, A&HCI, SCIE, SCOPUS, KCI 중 택1)

용역실적	용역명	직위(급)	발주기관	수행기관	계약금액	용역기간	기여도

상훈	상훈(명)	수여일	수여기관	상훈내용
자격증	자격증(명)	종류	취득일	발급기관
	조선기술사	기술사		
		기능장		

라. 가산점(해당자만 작성)

한국사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정등급	시행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년 월 일

성 명 : (인)

※ '우대사항' 란의 경력은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사항만 작성

이 력 서 작 성 요 령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및 분야 : 응시직급(분야) 및 응시요건 해당란 1개만 체크

3. 응시자격

【해기사 면허증】

○ 여객선·화물선 분야의 경우 '가' 또는 '나'항목으로 지원할 경우, 각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해기사 면허 직종, 등급, 취득일, 유효기간 및 발급기관을 기재하고 해기사 면허증 사본도 같이 제출

【기본경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해기사 경력자는 '승무경력증명서' 사본 반드시 제출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경력도 동일)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근무처, 근무기간(시작일, 종료일), 직위(급), 근무방식(주00시간 근무)이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되,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예 : 3년 6월 10일 → 42개월 10일)

4. 우대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기재

○ 나머지 제출서류 및 기재 요령은 '응시자격'의 '기본경력' 과 동일

【연구논문 실적】

○ 최근 5년 이내('17.1.1. 이후)에 SCI, SSCI, A&HCI, SCIE, SCOPUS, KCI에 게재된 연구논문(학위논문 제외)만 작성

○ SCI, SSCI, A&HCI, SCIE, SCOPUS, KCI에 게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각 홈페이지 화면 캡쳐 등) 및 논문표지, 논문제목, 기여도 및 발표자 등이 표시되어 있는 논문 사본 필수 제출

【용역 실적】

○ 최근 5년 이내('17.1.1 이후)에 용역을 수행(발주는 제외)한 실적만 작성

○ 용역계약서를 포함 용역상세내용, 완료여부(준공계 서류 등), 참여자 및 본인 기여도(수치표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필수 제출

【상훈실적】

○ 최근 5년 이내('17.1.1. 이후)에 수여받은 상훈에 한함

○ 최근 것부터 기재하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상훈실적만 작성

○ 상훈명은 간략히 기재, 수여일은 상훈을 수여받은 날을 년, 월, 일로 작성, 수여기관은 상훈을 수여한 기관 기재

○ 상훈내용은 상훈을 수여받게 된 업무실적 간단히 작성

【자격증】

○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작성

○ 자격증 종류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중에 해당하는 것 기재

5. 작성 유의사항

○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가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항 작성 금지

○ 글씨크기 등은 작성자가 적절히 조절하여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고,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여러 장으로 작성 가능

<별지서식 제4호> ※ 필수제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전문임기제 응시 직급(분야) 및 응시요건 (아래 1개만 선택)															
	여객선·화물선															
	가급(운항)						나급(운항)					나급(감항)				
	가	나	다	라	마	바	가	나	다	라	마	가	나	다	라	마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삭제 후 작성 요망

1. 자기소개서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직무분야에서의 주요 실적 및 성공사례,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특기사항,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2.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글씨체 바탕 13p 가는 글씨, 줄간격 150mm로 작성(A4용지 2~3매 이내 분량) 용지 좌우 여백은 각각 20mm, 상하 여백은 각각 15mm, 머리말 및 꼬리말은 각각 10mm 로 작성

2021. . . 작 성 자 : (인)

<별지서식 제5호> ※ 필수제출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성 명	전문임기제 응시 직급(분야) 및 응시요건 (아래 1개만 선택)															
	여객선·화물선															
	가급(운항)						나급(운항)					나급(감항)				
	가	나	다	라	마	바	가	나	다	라	마	가	나	다	라	마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삭제후 작성 요망

1.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분야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 직무에 대한 이해, 소견 및 응시 취지,
   ②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 구체적인 실천방안 순으로 자유롭게 기술합니다.

2.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글씨체 바탕 13p 가는 글씨, 줄간격 150mm로 작성(A4용지 2~3매 이내 분량) 용지 좌우 여백은 각각 20mm, 상하 여백은 각각 15mm, 머리말 및 꼬리말은 각각 10mm 로 작성

2021. . . 작 성 자 : (인)

<별지서식 제6호> ※ 필수제출

관련분야 주요경력 요약서

근무기관 (부서포함)	근무기간	근무월일수	직위(급)	담당업무 및 주요실적	근무 형태
OO주식회사 (부)	2011.1. 1 ~ 2012.3.10	00개월00일	선장	o o o	주00시간
	2012.3.11 ~ 2014.3.11	00개월00일	1등 항해사	o o o	주00시간
OO주식회사 (부)			대리		주00시간
총 경력		00개월00일			

【작성요령】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할 것**

③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예 : 3년 6월 10일 → 42개월 10일)

④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⑤ 주요수행업무 및 업무실적은 요약하여 80자 이내로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⑥ 근무형태는 주당 근무시간 표시,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기재 필수

<별지서식 제7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연구논문 요약서

성 명	전문임기제 응시 직급(분야) 및 응시요건 (아래 1개만 선택)																
	여객선·화물선																
	가급(운항)						나급(운항)					나급(감항)					
	가	나	다	라	마	바	가	나	다	라	마	가	나	다	라	마	
	□	□	□	□	□	□	□	□	□	□	□	□	□	□	□	□	

논문개요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논문 게재지 및 게재일자 ▪ 등재구분("√" 표기) : □ SCI　□ SSCI　□ A&HCI □ SCIE　□ SCOPUS　□ KCI(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게재지명 : ▪ 게재일자 : ○ 발표자 성명(공동연구자 포함) : ▪ 응시자(논문기여도) : *홍길동 (제2저자/5인)* ▪ 공동연구자 :

주요내용 요약

Ⅰ. 연구목적

1.

가.

1)

가)

(1)

(가)

Ⅱ. 연구내용

Ⅲ.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1.　.　.

응시자 :　　(인)

※ 주요내용 요약은 2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표지, 논문제목, 기여도 및 발표자 등이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필수 제출

<별지서식 제8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용역실적 요약서

성 명	전문임기제 응시 직급(분야) 및 응시요건 (아래 1개만 선택)																
	여객선·화물선																
	가급(운항)						나급(운항)					나급(감항)					
	가	나	다	라	마	바	가	나	다	라	마	가	나	다	라	마	
	□	□	□	□	□	□	□	□	□	□	□	□	□	□	□	□	

용역개요	○ 용역명 ▪ 한글명 : ▪ 영문명 : ○ 용역수행 시 직급: ○ 발주기관 / 수행기관 : ○ 용역계약금액 : ○ 용역참여도 : ex) M/M 등

주요내용 요약

Ⅰ. 용역목적

1.

가.

1)

가)

(1)

(가)

Ⅱ. 용역내용

Ⅲ. 용역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용역실적 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1. . .

응시자 : (인)

※ 주요내용 요약은 2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계약서, 용역수행자, 용역참여비율,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페이지 사본 필수 제출

<별지서식 제9호> ※ 필수제출(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공무원 신규채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면허)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및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공무원 채용·관리를 위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기관에 제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해당기관	제공 항목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하여 원본과 동일하게 유요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은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 . .

성명 (서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